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19. 7.



목 차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1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1. 목적	1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2
제3절 주간운용사에 대한 설명	3
1. 주간운용사 선정의 목적	3
2. 사업위탁의 구조	3
3. 주간운용사의 역할 및 사무	3
4. PIS 펀드 운용구조 및 규모	5
5. PIS 펀드의 투자정책	7
6. 제안형 펀드 개요	9
7.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	10
(1) 계약보증금	10
(2) 사업운영기간	10
(3) 보수율	11
(4)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의무	12
(5) 주간운용사의 하위운용사 선정 입찰 동시 지원 불가	12
(6) 지정 운영지원기관 활용 의무	13
(7)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	13
(8) 운영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	13
(9) 시스템 등의 준비	13
(10) 제안서 이행 여부 점검	13
(11) 주간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14

8. 추진 일정	14
9. 제안서 접수 및 작성 관련 문의	15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6
1. 제안업체 일반요건	16
2. PIS 펀드 관리인력 배치요건	17
3. 매입약정요건	17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7
1. 제안 시 유의사항	17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17
(2) 제안요청 관련 KIND의 면책사항	17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18
(4) 제안요청서의 철회	18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18
(6) 입찰공고	19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19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19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20
(1) 제안서 작성체계	20
(2) 제안서 작성요령	21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22
(4) 제안서 제출요령	24
(5) 제안서 수정	24
(6) 제안설명회	25

(7) 제안서의 효력	26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26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26
(10) 제안서 작성비용	26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제1절 기술능력 부문	27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	27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27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28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주간운용사 선정	29
1. 주간운용사 선정원칙	29
2.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30
제2절 평가	33
1. 평가의 개요	33
(1) 평가의 기본 목적	33
(2) 평가의 기본 방침	33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33
2. 평가항목 및 배점	36
붙임 1. 주간운용사 선정 정량평가 세부기준	38
붙임 2. 주간운용사 선정 정성평가 세부기준	44
붙임 3. 표준화점수법	48
붙임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9
붙임 5. 집합투자기구 분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	50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 사업명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
- 주관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펀드관리전문기관)
- 위탁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단,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장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사업예산 : 투자약정액(6,000억 원)의 0.30% (부가세 포함)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1. 목적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해외 수주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 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이하 ‘PIS 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본 제안요청서는 1단계 1.5조 원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PIS 펀드는 우선 1단계로 정부재정 1,500억 원과 공공기관의 투자 참여분 4,500억 원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6,000억 원에 민간투자자 투자금 9,000억 원을 매칭하여 총 1.5조 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본 제안요청서는 PIS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하 ‘KIND’)가 펀드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PIS 펀드를 운용 및 관리하고, 투자자에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주간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간운용사는 PIS 펀드의 투자 방향을 담은 투자정책서를 바탕으로 모태펀드를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방식으로 운용하며, 해외 인프라 시장 리서치, 투자전략 제안 등 PIS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 KIND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PIS 펀드의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본 제안요청서를 통해 주간운용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제안업체’)가 KIND에 제안할 내용, 제안방법 및 형식, 일정, 제안업체의 사전 이해에 필요한 사항 및 제안서 평가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주간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주간운용사의 선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제4장 제안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주간운용사에 대한 설명

- 제안업체는 PIS 펀드의 설립 목적, 운영 체계와 주간운용사의 역할 및 사무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간운용사 선정의 목적

- 주간운용사는 PIS 펀드의 정책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하위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PIS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한다.

2. 사업위탁의 구조

- PIS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KIND는 PIS 펀드의 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 존속기간인 30년 간 PIS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펀드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KIND는 본 공고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을 담당할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 선정된 주간운용사에 모태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위펀드(제안형 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 PIS 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 및 하위펀드(제안형 펀드에 한정)로부터 각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모태펀드로부터 받는 보수는 주간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의 투자비 및 위탁사업기간의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3. 주간운용사의 역할 및 사무

- KIND는 모태펀드를 위탁 운용하는 주간운용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 운용 및 제안형 펀드의 운용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 주간운용사의 모태펀드 운용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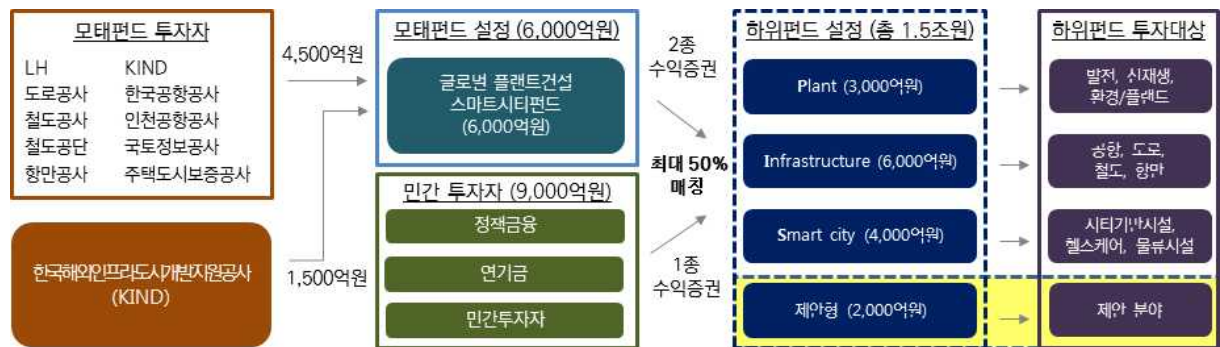
1. 자산 편입기준, 자산 배분 정책 등을 포함한 모태펀드 운용전략 수립
2. 하위운용사 선정기준 등 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
3. PIS 펀드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4. 하위펀드 운용 관련 자문
 - 가. 신규 프로젝트 투자 시 자문
 - 나. 투자정책서 준수 여부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5. PIS 펀드 자산운용 관련 수익자 정보제공 및 교육
6. 기타 관계 법령 및 펀드관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사무

□ 주간운용사의 제안형 펀드 운용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 금융 구조화
2.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 및 자산관리
3. 국내 정책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투자 협력
4. 펀드와 관련되어 발굴된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문
5. 기타 관계 법령 및 펀드관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사무

4. PIS 펀드 운용구조 및 규모

- PIS 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의 방식으로 운용되며, 공공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모태펀드를 민간투자자 투자분에 대해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모태펀드 투자자 구성 및 운용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¹⁾



- 펀드관리전문기관은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PIS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주간운용사 및 운영지원기관 선정, 운용 관련 투자정책서 수립 및 조정,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와 해외 인프라 투자 관련 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

- PIS 펀드의 운용구조 상 ▲ 모태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주간운용사와 ▲ 이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하위운용사가 있고 | ▲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수행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격 산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다.

- 주간운용사는 포괄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운용사 내에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 ▲ 운용전략 수립 및 운용 ▲ 하위운용사 선정 및 하위펀드 설정 ▲ 컴플라이언스 및 성과평가 기능 등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하위펀드 투자 분야 및 투자 규모 예시를 고려하여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에 지원하고, 해당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 하위펀드의 투자 분야는 플랜트(Plant), 인프라(Infrastructure), 스마트(Smart city) 분야와 주간운용사가 제안하고 운용하는 제안형 펀드 분야로 구성되며, 투자 분야별 최대 투자비율, 모태펀드 최대 투자액, 하위펀드 조성 목표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계획안이며 최종 투자기관 및 투자액은 변경 가능

< PIS 펀드 운용전략 예시 >

(단위 : 억 원)

구분	최대 투자 비율	펀드 약정액			투자 분야
		모태펀드	민간 투자자	하위펀드	
P/ 플랜트	40%	1,200	1,800	3,000	발전, 신재생, 환경/플랜트
I/ 인프라	40%	2,400	3,600	6,000	공항, 도로, 철도, 항만
S/ 스마트	45%	1,800	2,200	4,000	도시기반시설, 헬스케어, 물류시설
제안형 (주간운용사)	30%	600	1,400	2,000	제안 분야
합 계		6,000	9,000	15,000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하위운용사 선정기준 및 자금 배분 계획은 제안업체가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 가능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모태펀드 운용전략」 부문에 제안)

5. PIS 펀드의 투자정책

-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의 운용에 있어 다음의 투자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모태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투자 한도, 자산 배분, 손실부담순위, 초과이익 배분의 조건을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다.

< PIS 펀드 투자정책서 (안) >

구분	주요 내용
의무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이 계약을 통한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국가신용도 Ba3/BB-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에 투자한다. ▪ 단, 국가신용도 Ba3/BB- 미만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수요위험 제한, 신용 보강,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제한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운용사는 의무투자대상에 대한 투자하한*,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 한도, 투자대상별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 하여야 한다. <p>* 주간운용사 선정 후 별도 협의</p>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는 하위펀드 설정액 대비 50% 이내에서 하위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손실부담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하위펀드 운용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하여 해당 하위펀드에 납입한 모태펀드 투자 금액을 한도로 우선 부담할 수 있다. ▪ 모태펀드 운용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하여 정부출자분의 모태펀드 납입금액을 한도로 KIND가 우선 부담할 수 있다.

초과이익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하위펀드 운용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초과수익률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정부출자분, 공공기관 출자분, 민간투자자 출자분 간 차등하여 배분할 수 있다.
------------	---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제안업체가 수정 제안 가능

- 위 투자정책은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확정된 투자정책을 반영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형 펀드 개요

- 제안형 펀드는 주간운용사 전용 분야이며, 제안업체는 다음의 제안형 펀드 개요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형 펀드 주요 투자조건〉

구 분	주요 내용
펀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신탁형, 사모형, 폐쇄형, 환매금지형,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인프라, 발전 및 발전 관련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법인 또는 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Mezzanine 등을 포함) 등 자본시장법 및 해외건설촉진법 상 기초자산
모태펀드 최대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투자 한도 600억 원 (총 설정액의 30% 이내)
펀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억 원 이상
신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설정 후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2년 연장 가능)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대상 자산의 상환 및 매각으로 상환금 및 매각대금이 모두 회수되는 날
매입약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인드 펀드, Capital Call 방식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구조로 제안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름
목표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름

-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은 모태펀드 운용 업무를 겸할 수 없다.

7.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

(1) 계약보증금

- 최종 선정된 업체는 사업운영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모태펀드 투자자와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내 지급될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 6,000억 원 x 제안보수율 x 5년 x 10%

(2) 사업운영기간

- 주간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다만, 사업운영기간 종료 이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될 수 있으며, 이는 1회에 한한다.

(3) 보수율

- 주간운용사의 보수는 ①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및 ②제안형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로 구분된다.

①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는 ①기본운용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른 ②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이 중 기본운용보수만이 가격입찰의 대상이 된다.

① 기본운용보수는 제안업체가 투자약정액의 30bp (0.3%) 이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안한다.

② 성과보수는 ③수익성 기준과 ④투자소진을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에 각 목표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

가) 수익성 기준	나) 투자소진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 내 실현수익률이 목표수익률 (보수 차감 후) 기준 A % 이상 달성 시, 초과 수익의 B %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단, 실현수익률은 모태펀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 내 확정된 현금흐름만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내 운용전략으로 제시한 연도별 목표 투자소진율의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연 단위로 지급한다.

<투자소진율 성과보수 예시>

(단위: %, 억 원)

구분	운용기간 ^{주2)}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주3)}	
연간 목표 투자소진율 ^{주1)} (A)	15%	20%	25%	30%	10%	100%
성과보수 지급한도 (B) = (A) * 5억 원	0.75	1	1.25	1.5	0.5	5
연간 실제 투자소진율 (C)	5%	15%	25%	35%	20%	100%
성과보수 지급액(D) = min[(B), 5억 원*(C)]	0.25	0.75	1.25	1.5	0.5	4.25

- 주1) 제안회사는 연도별 목표소진율을 제안서 2권 정성평가 운용전략 부문에 포함하여 제안서 작성
- 주2) 각 연도 미소진 성과보수(목표 투자소진율 - 실제 투자소진율)는 소멸하며, 각 연도 성과보수 지급한도액은 연간 목표소진율 * **5억 원**으로 설정
- 주3) 최종 운용기간(5년 차) 목표소진율은 20% 이내에서 제안해야 함

② 제안형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 제안형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는 동일 유형 펀드의 업계 평균 운용보수율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율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보수율로 한다. 단, 협상을 통해 제안한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의무

- 주간운용사는 제안형 펀드에 대해 최종 설정액 대비 **1% 이상** 매입 약정하여야 한다.

(5) 주간운용사의 하위운용사 선정 입찰 동시 지원 불가

-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하위운용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간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안형 펀드의 하위운용사 지위를 겸할 수 있다.

(6) 지정 운영지원기관 활용 의무

- 펀드관리전문기관이 선정 및 지정한 PIS 펀드 운영지원기관(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회사)을 활용하여야 한다.

(7)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

-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 신청 조건〉

선정된 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갖춘 운용인력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8) 운영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

- 주간운용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9) 시스템 등의 준비

- 주간운용사는 PIS 펀드 운용 관련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주간운용사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10) 제안서 이행 여부 점검

- KIND는 선정된 주간운용사에 대한 제안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 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투자자 간 협의를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11) 주간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KIND는 주간운용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에 태만한 경우에는 투자자 간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간운용사가 준비 부족 등으로 최대 4개월 (3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 이내 업무개시하지 못하거나 정기 점검결과 제안내용과 다르게 운용될 경우 투자자 간 협의를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업무개시의 판단 기준은 모태펀드 설정 여부로 한다.
- 주간운용사는 관계 법령,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제 규정 및 투자정책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추진 일정

- 주간운용사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KIND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사전규격공개 : 2019년 7월 18일(목)
 - 입찰공고 : 2019년 7월 23일(화)
 -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 관련 문의 마감 :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 (이메일 문의만 가능)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마감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입찰공고에 의함
 - 평가결과 통보 (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투자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연장 1개월) 이내, 추후 통지
- 주간운용사 업무개시 : 모태펀드 설정일

9. 제안서 접수 및 작성 관련 문의

-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에 의함
- 작성 관련 문의 : 입찰공고 게시 후 제안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함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관리본부 (invest@kindkorea.or.kr)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 제안업체 일반요건

- 제안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 입찰에 지원 가능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인가 또는 동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업자이며,
 - 2018년 12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운용실적 존재하고,
 - 2019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의 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조사분석인력** 1인 이상
 - 위험관리인력** 1인 이상
 - **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은 조사분석(리서치) 및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
- 상기 인력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장 제2절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PIS 펀드 관리인력 배치요건

- 제안업체는 PIS 펀드 관리인력 1인 이상의 배치 계획을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인력은 하위펀드 투자동향 등을 포함한 운용보고서 및 수익자 요구자료 작성, 보고 및 대응업무 담당
 - 해당 인력은 인프라 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갖춘 자로서 모태펀드 운용인력과 동일할 수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지 아니함

3. 매입약정요건

- 주간운용사는 제안형 펀드에 대해 최종 설정액 대비 1% 이상 매입 약정하여야 하며, 제3권 첨부서류에 제안업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 요건의 수용을 전제하여 응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요청 관련 KIND의 면책사항

- KIND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KIND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KIND는 법령의 개폐 및 정책의 변화로 PIS 펀드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KIND는 입찰 마감일 이전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KIND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때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KIND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IND는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입찰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서의 철회

- KIND는 PIS 펀드 주관운용사의 자격에 부합되는 제안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는 본 제안요청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KIND는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KIND가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및 공사 홈페이지(www.kindkorea.or.kr)를 통해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본 제안요청서는 주관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소유권은 KIND에게 있다.

(6)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KIND 홈페이지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고한다.
- 제안업체는 KIND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방문 질의를 할 수 없으며, 이메일(invest@kindkorea.or.kr)을 통해서만 질의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간 가능하다.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KIND는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IND는 익명의 질의나 KIND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KIND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KIND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는 KIND의 해석에 따른다.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위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기간, 제안서 평가기간 중에 PIS 펀드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 KIND 임직원, 소관 주무부처 공무원 및 선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자 등 주간운용사 선정업무에 관련된 자를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또는 투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주간운용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상의 지위 박탈,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 불법·부당한 정보획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KIN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입찰담합, 부정행위, 부적격자 사업참여 등으로 인하여 KIND의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 본 건과 관련하여 KIND가 발주한 용역(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 등)을 수행한 기관과 그 기관의 종사자, PIS 펀드 운영 관련 위원으로부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한 PIS 펀드 주간운용사 선정목적, 사업의 위탁구조, 주간운용사의 역할, PIS 펀드의 운용구조,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작성체계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안요청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이라는 제목하에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3권 첨부서류 등으로 하위 제목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자료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9년 6월 말(또는 최근 결산일)이며,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일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인쇄 및 제본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양면으로 흑백 또는 컬러로 인쇄하며, 제안서 각 권을 따로 책자로 제본한다.

2) 언어

-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외래어 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영문, 한문을 사용할 수 있다.

3) 목차 및 쪽 표시

- 제안서에는 목차 및 쪽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분량

- 제안서는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은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30분 이내 발표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제안 서류상의 원본확인 및 서명

- 제안서 각 권의 원본에는 표지에 “원본” 임을 표시한 후 다음 쪽에 제안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 모든 제안서 사본에는 표지에 “사본” 임을 표시한 후 표지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제안 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 각종 증명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사용인감 또는 회사 직인을 찍어 제출한다. (출력자료의 경우 인쇄된 직인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 중 상충하는 내용은 KIND의 해석에 따른다.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확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하점을 부여하여 처리한다.
-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기재 판단은 KIND의 해석에 따른다.
- 필요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안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1>
- 협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3>
- 서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5>
- 제안업체 자격요건 확인자료
 - 집합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 관련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발급된 서류의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일 기준 직전 3년 영업보고서 (공시 대상 법인의 경우 발췌 제출 가능)
- 2019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 증빙서류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또는 영업보고서 등)
- 제안업체 일반요건 중 인력* 관련 증빙서류 (p. 16 참고)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일자 조직도 1부 (기준일자 기재 후 원본대조필 날인), 금융투자협회 운용인력 등록 확인서류 (운용인력에 한함),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함)
- PIS 펀드 관리인력** 배치요건 증빙서류 (p. 17 참고)
- 주간운용사 투자확약서 (법인인감 날인 필)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 6>
 - * 제안업체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인력 2인, 조사분석인력 1인 및 위험관리인력 1인이며, 해당 인력 **4인** 관련 자료만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 내 기재한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자격인력 및 본 펀드 관련 인력에 관하여는 형광펜 표시 후 제출

2) 제안서

-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 <제안서 제1권 양식>
-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안서 제2권 작성요령 참고>
- 제3권 첨부서류
 - 운용자산 증빙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본 펀드 관련 인력 (모태펀드 운용인력,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 PIS 펀드 관리인력) 증빙서류

<본 펀드 관련 인력 증빙서류 제출 목록>

구분	모태펀드 운용인력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	PIS 펀드 관리인력
개인별 이력서 (인감날인 必)	○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	○
투자자산운용사	○	○	필요시 제출
자격증 등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 이직 확인서 (이직 예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본인이 서명날인)
- 제안형 펀드 투자유치 계획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 7)>
-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필요할 경우에 한함)

(4) 제안서 제출요령

-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 수량은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명’ 과 같으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에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PDF 파일의 형태로 문서 구분(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등) 중 “기타문서” 로 제출하고,
- 입찰참가 신청서류 원본과 다음의 제출 수량(원본수량 및 사본수량)에 따라 각각 제본한 제안서 제1권 및 제2권, 제안서 제3권을 입찰공고에 따르는 접수 마감일에 제출처에 방문 제출한다.
 - * e-발주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서 제1권(정량제안서) 및 제2권(정성제안서)은 USB 2부에 담아 제본된 실물 제안서 방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명>

제출서류	원본 수량	사본 수량	비고	양식 명
I.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1)>
2. 협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2)>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3)>
4. 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4)>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5)>
6. 제안업체 자격요건 확인자료	1부	-		
7. 주간운용사 투자협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6)>
II. 제안서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	1부	5부*		<제안서 제1권 양식>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1부	15부*		**
3. 보수율 제안 (가격투찰)				입찰금액 전자투찰: 나라장터
4. 제3권 첨부서류	1부	2부		
4-1. 제안형 펀드 투자유치계획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7)>

* 원본 전체 및 사본 표지의 다음 장애만 사명 표기 가능, 제안서 사본에 업체명 표기 발견 시 추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제2권 작성요령> 참고하여 PPT 양식으로 작성 요망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 전자적 방식으로 그 지급의 확약을 하여야 한다.
- 협상이 성립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산정 기준*에 따른 입찰보증금 상응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보증금 산정 기준: 6,000억 원 x 제안 보수율 x 5년 x 5%

2) 제안서 표시

- 제안업체가 제출할 제안서 본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상자에 넣은 후 상자 겉면에 “PIS 펀드 주간운용사 제안서” 라는 문구와 함께 제안업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마감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제출처를 확인하여 제출 마감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수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추가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 KIND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보나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안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

- 일시 : 입찰공고에 의함
- 대상 : 제안서 제출 업체에 한함
- 제안설명회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업체당 5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7) 제안서의 효력

-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KIND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 모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은 KIND에게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
- KIND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이나 인용한 수치 등을 향후 PIS 펀드 운영에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KIND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KIND는 각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다른 제안업체에 공개하지 않는다.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 KIND는 제안서 마감 시간까지 제안서 접수 현황이나 제안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10)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PIS 펀드의 운용구조, 주간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주간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제1절 기술능력 부문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 제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붙임 1 주간운용사 선정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PIS 펀드의 조성·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제2권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분량은 30분 이내 발표, 20분 내외의 질의응답 시간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붙임 2 주간운용사 선정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 평가대상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 시 사업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제안업체는 7.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4) 보수율에 상술된 보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격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가격 투찰 시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보수율 투찰 시 유의사항★

- 사업위탁기간 5년을 가정하여, 위탁운영사가 지급받을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기의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가격 투찰

※ (예시1) 운용보수율 30bp 가격 투찰 시, 6,000억원*30bp*5년 = 90억원 투찰

※ (예시2) 운용보수율 18bp 가격 투찰 시, 6,000억원*18bp*5년 = 54억원 투찰

- 투찰가격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금액으로 실제 계약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 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간운영사 보수율은 조정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주간운용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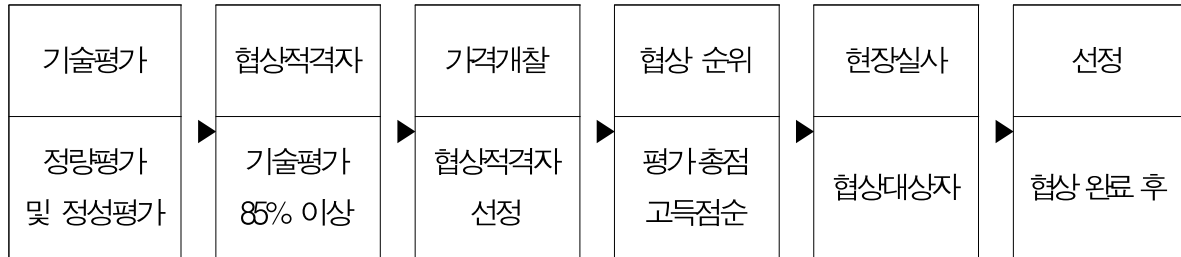
- KIND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협상절차를 거쳐 주간운용사로 확정하며 제안내용, 국가재정법령 및 관련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PIS 펀드의 주간운용사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주간운용사의 선정원칙 및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간운용사 선정원칙

- KIND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주간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원칙을 준수한다. 제안업체들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KIND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한다.
 -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주간운용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 도덕성을 겸비하고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 주간운용사 선정 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접수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안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참조한다.
- KIND는 제안서 접수 시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업체에 대해 기술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정량적 요소에 대한 평가

- 정량평가는 제안서 제1권 정량적 요소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투자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 중이라도 적발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제안업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 (선정위원회)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모태펀드 투자자 간 협의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Pool을 사전에 구성하고, 해당 Pool 내에서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확정한다.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전에 정의된 평가항목과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개찰

- 응찰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선정

- 협상대상자는 가격개찰 후 5일 이내에 평가총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동점자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지표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관리방안 (30점) ▶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20점) ▶ PIS 펀드 운용방안 (20점) ▶ 모태펀드 운용전략 (10점) ▶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10점) ▶ 제안형 펀드 계약조건 (10점) ▶ 운용자산 (10점) ▶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5점) ▶ 제안형 펀드 운용 전문성 (5점) ▶ 모태펀드 계약조건 (5점) ▶ 운용능력 (5점)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5점) ▶ 인적자원 (5점) ▶ PIS 펀드 이해도 (5점) ▶ 재무안정성 (5점) ▶ 보수율 적정성 (5점)

□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협상대상자로서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수행하며, 현장실사 결과 결격여부가 없는 경우 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는 선정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실사에 응하여야 한다.

□ 협상 및 주간운용사 최종 선정

-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될 경우, **7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KIND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은 KIND와 협상대상자 간 상호 합의에 이룸으로써 협상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펀드관리전문기관(KIND)과의 협상이 완료된 후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 상기 제한기일은 KIND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평가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기본 목적

- KIND가 PIS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주간운용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1개 업체 단독 제안 시는 유찰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 공개모집에서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결과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입찰참가 업체가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내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합하는 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체에 한해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 제안의 내용에 대해 정성평가를 수행하며, 그 평가는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행한다.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KIND가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2개사인 경우 각 지표별 표준화점수에 의한 배점 만점(40점)에 대하여 두 기관 중 상위기관은 40점 만점을, 하위 기관은 상위기관 지표에 비례하여 40점에서 차감된 점수를 산정하되 제출자료가 음수인 경우 0점을 부여하고, 배점의 60%를 가산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 재무안정성-총자산순이익률(2.0)

$$\begin{aligned} & \text{A사} = 150\%, \text{ B사} = 50\% \text{인 경우,} \\ & \text{A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150\% / 150\%) = 2.0 \\ & \text{B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50\% / 150\%) = 1.47 \end{aligned}$$

ex) 재무안정성-총자산순이익률(2.0)

$$\begin{aligned} & \text{A사} = 150\%, \text{ B사} = -50\% \text{인 경우,} \\ & \text{A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150\% / 150\%) = 2.0 \\ & \text{B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0) = 1.2 \end{aligned}$$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등급간 배점은 우수(100), 양호(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한다.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 정성) 분야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가운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능력 평가(90점)”, “가격 평가(1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평가(20점)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20)	재무안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이익률(ROA) 3년 평균 (2) ▪ 자기자본이익률(ROE) 3년 평균 (2) ▪ 자기자본비율 3년 평균 (1)
	운용자산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2) ▪ 총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2) ▪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4) ▪ 해외자산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2)
	인적자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임직원수 (2) ▪ 본 펀드 관련 인력 업계경력 (3)

- 정성평가(70점)

구분	평가항목		
<제1장> PIS 펀드 운용방안 (20)	PIS 펀드 이해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S 펀드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
	운용능력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분야 및 재간접펀드 운용성과 ■ 제안하고 있는 전략과 관련된 운용 경험 ■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업무 협력방안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D와의 업무 협력 체계의 적정성
	보수율 적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율 산정체계 및 적정성
<제2장>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관리방안 (30)	모태펀드 운용전략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실현 가능성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인력 및 PIS 펀드 관리인력의 구성, 조직 및 전문성 ■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등
	모태펀드 계약조건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및 효과성 ■ 성과보수 체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절차별 전담조직 운영상의 독립성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후관리시스템(자산평가, 모니터링 등)
<제3장>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20)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제안형 펀드 운용 전문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의 구성, 조직 및 전문성,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등
	제안형 펀드 계약조건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 규모 ■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규모 및 실현가능성

○ 가격평가(10점)

구분	평가항목		
가격평가 (10)	운용보수율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보수율

1. 재무안정성 (5점)

□ 기준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공고일 기준 직전 3년 결산일

〈재무안정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총자산이익률 (ROA)	2.0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사용 (자산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ROE)	2.0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자기자본비율	1.0	자본총계 / 자산총계	

- 1) 최근 3개년 자료의 단순평균값을 사용
- 2)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하며,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경우 연결 이후 지분율을 반영하여 모회사에 합산처리함

□ 재무안정성

- 제안업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 있는 자산총액, 자본총액(=자기자본), 당기순이익을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사용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2. 운용자산 (10점)

- 기준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시스템 출력자료 등)
- 증빙자료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시스템 출력자료 및 계약서 등 입증자료
- 자료기준일 : 2019년 6월말

<운용자산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2.0	$\frac{\sum(3년\ 기간의\ 분기말\ 총\ 순자산총액)}{12}$	▶ 매 분기 말 기준 (12개 분기)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2.0	$\frac{\sum(3년\ 기간의\ 분기말\ 총\ 순자산총액\ 증가율)}{12}$	▶ 매 분기 말 기준 (12개 분기)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4.0	$\frac{\sum(3년\ 기간의\ 분기말\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순자산총액)}{12}$	▶ 매 분기 말 기준 (12개 분기)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2.0	$\frac{\sum(3년\ 기간의\ 분기말\ 해외자산\ 순자산총액)}{12}$	▶ 매 분기 말 기준 (12개 분기)

- 1) 총순자산은 공/사모 운용규모를 지칭하며, 연기금투자폴 운용규모(통합펀드)는 제외
- 2)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하며, 합병 이후 자료는 합병법인 기준으로 작성

□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2.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분기말 총순자산총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2.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기간을 분기로 구분하여 각 분기말 총순자산총액을 측정
- 제안업체별 12개 구간의 전 분기말 대비 총 순자산 증가율 계산
 : 총순자산 증가율(%) = (당 분기말 순자산총액 / 전 분기말 순자산총액-1)×100
- 12개 구간의 총 순자산 증가율을 합산한 뒤에 12로 나누어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4.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분기말 인프라자산 및 재간접 펀드의 총순자산총액을 합산 후 12로 나누어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붙임 5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분류와 제안업체의 분류가 다른 경우 자산명세서 등 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 재간접형 : 제2차 분류 집합투자기구 종류 중 증권집합-재간접형(61)
 - 인프라 : 제11차 분류 투자대상자산 등 인프라(SOC) (62)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2.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분기말 총순자산총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분류와 제안업체의 분류가 다른 경우 자산명세서 등 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 해외투자 : 제3차 분류 공사모, 국제투자 중 공모-해외투자(2) 또는 사모-해외투자(5)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3. 인적자원 (5점)

□ 기준 : 제안업체 제출자료

□ 증빙자료 : 영업보고서, 이력서 등

□ 자료기준일 : 2019년 6월 말

<인적자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총임직원수	2.0	임직원 수 총합계	▶ 제안업체 재직 중인 인원수 합계
본 펀드 관련 인력 평균 업계경력	3.0	$\frac{\sum_{i=1}^{\text{본펀드 관련인력수}} \text{업계경력}_i}{\text{본펀드 관련인력수}}$	▶ 제안업체가 제안한 본 펀드 관련 인력의 경력 10년 미만 : 해당 경력 10년 이상 : 10.0

□ 총임직원수 (2.0)

- 『총임직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영업보고서 일반 현황을 통해 확인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총임직원수』를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본 펀드 관련 인력 업계경력 (3.0)

- 본 펀드 관련 인력 대상으로 업계경력을 가중
 - ▶ 본 펀드 관련 인력은 모태펀드 운용인력,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 및 PIS 펀드

관리인력에 한함

- ▶ 업계경력은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 해당 인력과 관련하여 이력서(회사 날인)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 업계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까지 계산)로 가중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10.0으로 함(해당경력이 3년 6개월인 경우 가중치로 3.5를 부여, 10년 6개월의 경우 가중치는 10)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본 펀드 관련 인력 업계경력』을 표준화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대상자의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 경력으로 인정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p><제1장> PIS 펀드 운용방안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S 펀드 이해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S 펀드 주간운용사 역할에 대한 이해 · PIS 펀드 주간운용사 역할에 대한 이해 · 펀드관리전문기관 및 하위운용사 역할에 대한 이해 ▶ PIS 펀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 □ 운용능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펀드 및 재간접펀드 운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프라 펀드 및 재간접펀드 (모자형 제외) 투자 운용 성과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 투자 규모 및 투자수익률, 투자방법 및 회수방법 등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 기재) ▶ 기관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 유치 실적 ▶ 제안하고 있는 전략과 직접 관련된 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전략, 하위펀드 운용전략을 구분하여 기재 ▶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구조 및 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의사결정체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의사결정 방식의 적절성 등) ▶ 기타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 업무협력방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D와의 업무 협력 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고객 서비스 조직 구축방안 · 시장 리서치 등 제공 가능 여부 · 기타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수율 적정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보수율 구조 및 책정근거,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부합적인 보수율 구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율 구조의 산정 근거 및 타당성(비합리적인 보수율 제시한 경우 패널티 포함) ▶ 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시 및 요인별 보수율 산정의 적정성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장>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관리방안 (30)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전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모태펀드 운용철학 및 운용목표 (자금소진 계획 등) · 하위펀드 분야별 투자전략 (세부 투자 분야 및 지역별 자원 배분 등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연도별 투자목표 등 투자실행 계획, 하위펀드 유동화 지원 등 회수 전략, 국내외금융 네트워크와 협력 전략, 민간투자자 발굴전략 등) · 모태펀드 투자리스크 관리전략 (환 관리전략, 손실 최소화 전략 등) · 하위운용사 선정 및 관리계획 (하위운용사 선정절차 및 선정 기준, 섹터별 하위운용사의 필요역량 분석, 하위운용사 교체 및 관리방안, 하위펀드 적시 모니터링 방안, 성과측정 및 피드백,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평가 방안, 하위펀드의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등) · 하위운용사 및 민관 투자자 간 협력 등 시너지 창출 방안 ▶ 기타 모태펀드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운용인력 및 PIS 펀드 관리인력의 구성, 조직 및 전문성,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등 · 투자계획/투자실행/평가 프로세스/위험관리 등 업무별 전담 인력 규모 및 구체적 담당업무,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투자계획/투자실행/평가 프로세스/위험관리 등 업무별 회사 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특성 및 구축계획 ▶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 운용기간 동안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

	<p>안 포함 (우수인력 이탈방지 및 유치방안, 구성 인력의 동기부여 방안,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운용 전문성에 관한 사항 <p>□ 모태펀드 계약조건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및 효과성 ▶ 성과보수 체계 제안 및 근거 <p>□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절차별 전담조직 운영상의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조직 및 인력의 의사결정·인사·정보흐름의 독립성 · 운영조직의 사내 방화벽 확보 ·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절성(기능조직 역할) · 과거 3년간 관리감독기관의 제재·지적사항, 소송발생 현황 (자료제출 필요) ▶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과 위험관리 방안 ·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계획의 내용 · 모태펀드 및 하위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및 적시 모니터링 방안 · 위험관리조직의 전문성 · 위험관리조직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수준 및 의견반영 수준 ▶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방지 구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 및 제안형 펀드 운용 과정상 이해상충 이슈 · 이종수익증권에 따른 투자의사결정 상 이해상충 이슈 등 ▶ 기타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제3장>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20)

□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5)

- ▶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형 펀드의 운용철학 및 운용목표
- 제안형 펀드의 투자전략 (세부 투자 분야 및 지역별 자원 배분 등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투자대상 발굴 전략, 투자방법 및 투자구조 수립 전략, 연도별 투자목표 등 투자실행계획, 사후관리 전략, 국내외금융 네트워크와 협력 전략, 민간투자자 발굴전략 등)
- ▶ 기타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제안형 펀드 운용 전문성 (5)

- ▶ 운용인력의 구성, 조직 및 전문성
-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 운용기간동안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포함 (우수인력 이탈방지 및 유치방안, 구성 인력의 동기부여 방안,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 ▶ 기타 운용 전문성에 관한 사항

□ 제안형 펀드 계약조건 (10)

- ▶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 규모
- ▶ 제안형 펀드 투자 유치 계획 등

① 각 평가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제안업체별 표준화 값을 산출

$$- (\text{표준화 값}) = (X - \mu) / \sigma$$

where X : 각 제안업체별 평가항목점수

μ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평균값

σ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표준편차 값

② 표준화 값의 구간을 -2.5와 +2.5로 구분하여 표준화 점수를 부여

- 표준화 값 -2.5에서 2.5 사이,

$$(\text{표준화 점수}) = (95/5) * (\text{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미만,

$$(\text{표준화 점수}) = 2.5 / (-2.5 - \text{최소 표준화 값}) * (\text{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초과,

$$(\text{표준화 점수}) = 2.5 / (\text{최대 표준화 값} - 2.5) * (\text{표준화 값} - 2.5) + 97.5$$

③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Cutoff 가 대략 ± 2.53 이므로 표준화 값을 ± 2.5 로 나누어 신뢰도 99%를 벗어나는 값을 극단 값으로 처리

④ 특정 평가항목에 있어 해당점수가 없는 운용사를 0점 처리를 하면 이 또한 극단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가항목 내 최하점수를 획득한 제안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1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거칠 경우에는 정성평가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붙임 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begin{aligned} \text{평점} =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end{aligned}$$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5

집합투자기구 분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5차분류		7차분류		9차분류		9차분류 (계속)		10차분류		11차분류		12차분류		13차분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종류>		<공사모, 국제투자>		<종류형>		<판매형태>		<특성분류 I >		<특성분류 I >		<투자지역>		<투자대상자산 등>		<특성분류 II >		<추종지수>	
투자신탁	1	증권집합	11	<공모>	운용	1	직접판매	1	일반형	01	ETF	44	대한민국	01	<주식고편입형>	11	<해외주식투자전문8펀드 비과세>	01	<추종지수>		
투자회사	2	- 채권형	11	국내투자	1	클래스A	2	국내위탁	2	개인연금형	02	장기주택마련	45	글로벌	02	일반	12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KOSPI	11
투자유한회사	3	- 채권과생형	12	해외투자 (60형)	2	클래스B	3	혼합판매	3	세금우대형	03	원금보존추구형	46	아시아	03	가치주	13			KOSPI200	12
투자합자회사	4	- 주식형	21	국내외혼합 (30형)	3	클래스C	4	국외판매	4	근로자장기저축형	04	ELS투자펀드	47	아시아 (X-Japan)	04	성장주	14	<주식규모>		KRX100	13
투자합자조합	5	- 주식과생형	22		3	클래스D	5	국내외혼합	5	재형저축	05	카드채	48	동남아시아	05	배당주	15	일반		배당지수	14
투자익명조합	6	- 혼합주식형	31	<사모>	4	클래스E	6		6	가계장기저축형	06	국공채	49	친디아	06	섹터	16	대형주		지배구조지수	15
투자유한 책임회사	7	- 혼합주식과생형	32	국내투자	4	클래스F	7		7	일반적립형	07	장기주식형	50	러시아	07	<주식저편입형>	17	대형주		코스닥50	16
변액보험	V	- 혼합채권형	41	해외투자 (60형)	5	클래스H	8		8	보장형	08	KELF	54	서유럽	08	일반	18	중소형주		스타지수	17
		- 혼합채권과생형	42	국내외혼합 (30형)	6	클래스I	9		9	원금보장형	09	엔터테인먼트	55	동유럽	09	가치주	19	미분류		섹터지수	18
		- 투자계약증권	51	국내외혼합 (30형)	6	클래스P	A	환매수수료 없음	0	근로자유대	10	퇴직연금	60	북미	10	배당주	20	<목표투레이선>		개별주가	19
		- 투자계약증권과생	52		6	클래스W	B	30일미만	1	목표달성형	11	SRI펀드	61	중남미	11	섹터	21	단기 (1년미만)		개별가치주	20
		- 재간접형	61	4차분류		클래스J	C	(or 1개월)	1	전환형	12	분리과세	62	브릭스	12	<채권투자형>	22	중기 (1년이상~3년미만)		세계지수	21
		- 재간접과생형	62	<모/자신탁>		클래스S	D	60일미만	2	공사채-주식연계형	13	고수익고위험	63	중동	13	일반	23	중장기 (3년이상~5년미만)		선진국지수	22
		부동산	71	일 반	1	클래스SP	E	90일미만	3	특정업종선택형	14	비과세장기	64	아프리카	14	국공채	24	장기 (5년미만)		신홍시장지수	23
		부동산과생	72	모신탁	2	클래스ST	F	(or 3개월)	4	INDEX형	15	회사채형	65	호주	15	회사채	25	자유		중남미시장지수	24
		특별자산	81	자신탁	3	그 외 클래스	G	180일미만	4	특정회사투자형 (자사주펀드)	16	비과세장기	66	(뉴질랜드)	16	하이일드	26	<벤처기업투자신탁>		ETF	25
		특별자산과생	82	일 반		클래스T	H	270일미만	5	대형주형	17	월지급식펀드	71	일본	17	CP	27	<미분류>	ZZ	기타지수	26
		혼합자산	91	6차분류		클래스U	I	365일미만	6	중소형주형	18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72	중국(홍콩)	18	ABS	28			14차분류	
		혼합자산과생	92	<추/단/개/매>		클래스V	J	(or 1년)	7	중소형주형중	19	소득공제장기펀드	73	인도	19	MBS	29			<위험등급>	
		단기금융(MMF)	EE	추가개방	1	클래스X	K	18개월 미만	7	전환사채편입형	20	정부·공공기금(주간)	74	베트남	20	CBO(후순위채)	30				
		변액보험	VV	추가폐쇄	2	그 외 클래스	L	24개월 미만	8	전환사채형	21	정부·공공기금(주 간)	75	말레이시아	21	<부동산투자형>	31	<특별자산투자>		<비헤지형>	
				단위개방	3	일 반	M	24개월 이상	9	System운용형	22	정부·공공기금(계 별)	76	대중국	22	개발형	32	선박		매우높은위험	1
				단위폐쇄	4		N	환매불가	A	VentureCapital	23	정부·공공기금(계 별)	77	(중국, 홍콩, 대만)	23	임대형	33	인프라(SOC)		높은위험	2
							O			장외주식형	24	정부·공공기금(주 간)	78	(선진국)	24	PF(대출형)	34	엔터테인먼트		다소높은위험	3
							P			공사채형중	25	정부·공공기금(주 간)	79	글로벌	25	REITs형	35	아트		보통위험	4
							Q			전환사채편입형	26	정부·공공기금(계 별)	80	(신홍국가)	26	미분류	36	탄소배출권		낮은위험	5
							R			전환사채형	27	정부·공공기금(계 별)	81	(신홍국가)	27	<파생상품투자형>	37	우주&항공		매우낮은위험	6
							S			System운용형	28	정부·공공기금(계 별)	82	유럽	28	장내파생상품	38	상품		<헤지형>	
							T			VentureCapital	29	정부·공공기금(계 별)	83	대중국	29	장의파생상품	39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매우높은위험	A
							U			장외주식형	30	정부·공공기금(계 별)		(중국, 홍콩, 대만)	30	파생결합증권	40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높은위험	B
							V			공사채형중	31	정부·공공기금(계 별)		아시아퍼시픽	31	미분류	41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다소높은위험	C
							W			전환사채편입형	32	정부·공공기금(계 별)		아시아퍼시픽	32	<미분류>	42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보통위험	D
							X			전환사채형	33	정부·공공기금(계 별)		(X-Japan)	33		43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낮은위험	E
							Y			System운용형	34	정부·공공기금(계 별)		EMEA	34		44	사모투자제한집(공모)		매우낮은위험	F
							Z			VentureCapital	35	정부·공공기금(계 별)			35		45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장외주식형	36	정부·공공기금(계 별)			36		46	사모투자제한집(공모)			
										공사채형중	37	정부·공공기금(계 별)			37		47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전환사채편입형	38	정부·공공기금(계 별)			38		48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전환사채형	39	정부·공공기금(계 별)			39		49	사모투자제한집(공모)			
										System운용형	40	정부·공공기금(계 별)			40		50	사모투자제한집(공모)			
										VentureCapital	41	정부·공공기금(계 별)			41		51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장외주식형	42	정부·공공기금(계 별)			42		52	사모투자제한집(공모)			
										공사채형중	43	정부·공공기금(계 별)			43		53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전환사채편입형	44	정부·공공기금(계 별)			44		54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전환사채형	45	정부·공공기금(계 별)			45		55	사모투자제한집(공모)			
										System운용형	46	정부·공공기금(계 별)			46		56	사모투자제한집(공모)			
										VentureCapital	47	정부·공공기금(계 별)			47		57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장외주식형	48	정부·공공기금(계 별)			48		58	사모투자제한집(공모)			
										공사채형중	49	정부·공공기금(계 별)			49		59	사모투자제한집(공모)			
										전환사채편입형	50	정부·공공기금(계 별)			50						
										전환사채형	51	정부·공공기금(계 별)			51						
										System운용형	52	정부·공공기금(계 별)			52						
										VentureCapital	53	정부·공공기금(계 별)			53						
										장외주식형	54	정부·공공기금(계 별)			54						
										공사채형중	55	정부·공공기금(계 별)			55						
										전환사채편입형	56	정부·공공기금(계 별)			56						
										전환사채형	57	정부·공공기금(계 별)			57						
										System운용형	58	정부·공공기금(계 별)			58						
										VentureCapital	59	정부·공공기금(계 별)			59						
										장외주식형	60	정부·공공기금(계 별)			60						